

중국의 사모펀드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I. 서론

중국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에 대해서는 ‘사모주권투자기금(私募股权投资基金)’ 또는 ‘사모기금(私募基金)’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¹⁾ 중국 정부는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견지하고, 차스닥 출범 등으로 투자금 회수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모펀드의 발전에는 일부 문제점도 존재한다. 중국에서 사모펀드는 장기간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관리 외에 다른 규제수단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사모기금의 명의로 진행되는 비법모금사례도 많이 발생하였는바, 동방창업투자기업의 비법모금사건,²⁾ 전해P2P비법모

금사건³⁾ 등은 중국정부에 사모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더 한층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감독당국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적절한 감독관리와 관계되는 일부 규정들을 공포하였다. 아래에서는 2013-2014년에 사모펀드의 발전 및 감독관리와 관계되는 중요한 법제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II. 중국 사모펀드의 발전 및 관련 법제 개요

중국에서 사모펀드의 발전은 창업투자(Venture Capital: VC)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모펀드의 발전상황과 외부조건 변화에 따라 초창기단계 · 외자주도발전단계 · 전면적 발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⁴⁾ 제1단계는 1980

1) 사실상 넓은 의미의 사모펀드는 ‘사모증권투자기금’과 ‘사모주권투자기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모증권투자기금은 사모를 통하여 모집한 자금을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기금을 가리키며, 사모주권투자기금은 자금을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기금을 가리킨다. ‘사모주권투자기금감독관리방법’ (‘私募股权投资基金监督管理暂行办法’ 2014.8.21) 제2조에서는 “사모투자기금이란(아래에서는 사모기금이라고 한다)은 중국 국내에서 비공개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투자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는 사모펀드 또는 사모기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2) 구체적 내용은 深圳市罗湖区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4 深罗法刑二初字第147号)참조.

3) “P2P平台钱海创投停业，待收金额3807万元”，2014.11.05 방문.
<http://www.gw.com.cn/news/news/2014/0414/200000334033.shtml>

4) 吕海宁, “私募股权基金法律制度研究”, 大连海事大学博士学位论文, 2013年6月, 25-31면.

년대 중기부터 1998년 이전까지이다. 1985년 3월에 “중공중앙이 과학기술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은 중국 사모펀드발전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당시의 자금 내원은 정부투자였다. 1985년 9월에 중국의 첫 번째 창업투자회사인 중국 신기술창업투자회사(중창회사)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립되었는데 이는 중국 창업투자의 시작을 의미한다.

제2단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이때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제안과 국가의 7개 부서·위원회의 정책의 추진, 차스닥의 설립 등 영향으로 수백 개의 창업투자기업이 설립되었고, 자금내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민간자금과 외국자금의 투자였다. 그리고 대량의 국제창업투자펀드와 회사가 중국에 몰려들었고, 중국 창업투자는 많은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창업투자는 서방의 새로운 리스크관리기술과 규범화된 리스크운영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3단계는 2005년 이후이다. 중국은 ‘회사법’,

‘증권법’, ‘동업법’의 수정과 공포에 따라 사모펀드·창업투자기업 운영의 여러 가지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였다. 현재 중국의 사모펀드관련 관련 법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 분야에 따라 세무·도산·기업등기 등 다양한 분야의 법규정과 관련될 수 있으나, 사모펀드의 설립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로써 ‘회사법’, ‘증권법’, ‘동업기업법’ 및 ‘신탁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모주식투자기금(사모펀드)이 회사제·유한동업제·신탁제의 조직형태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회사형 사모펀드 설립과 관련하여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⁵⁾,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⁶⁾이 있고, 신탁형 사모펀드 관련 법제로써 ‘신탁법’, ‘신탁회사관리방법’⁷⁾, ‘신탁회사집합자금신탁계획관리방법’⁸⁾이 있으며, 조합형 사모펀드 관련 법제로써 ‘동업기업법’이 있다. 이외에 사모펀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 정책들을 두고 있고, 지방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5) ‘中华人民共和国创业投资管理暂行办法’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등 10개 부서 공동제정·공포, 2006).

6) ‘中华人民共和国外商创业投资管理规定’ (대외경제무역부 등 5개 부서 공동제정·공포, 2003).

7) ‘中华人民共和国信托公司管理办法’ (중국인민은행 공포, 2001).

8) ‘信托公司集合资金信托计划管理办法’ (중국인민은행 공포, 2001).

〈표 1〉 중국 사모펀드 관련 법규와 정책

	제정기관	정책명칭
1	中国证监会机构监管部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기구 감독관리부	《证券公司直接投资业务监管指引》(2011. 7. 8) 〈증권회사 직접투자 업무 감독관리 지침〉
2	国家发展改革委办公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무실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进一步规范试点地区股权投资企业发展和备案管理工作的通知》(2011. 1. 31)〈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무청의 진일보로 시범지역의 지분투자기업의 발전과 등록 관리사업을 규범화 할 것에 관한 통지〉
3	国家发展改革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发改委关于促进股权投资企业规范发展的通知》(2011. 12. 9)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분투자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
4	财政部、发展改革委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新兴产业投资计划参股创业投资基金管理暂行办法》(2011. 8. 17.) 〈신흥산업투자계획지분참여창업투자자금관리잠정방법〉
5	商务部 상무부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2011. 9. 1.) 〈상무부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하여 안전심사제도를 시행할 것에 관한 규정〉
6	国家税务总局 국가세무총국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股权投资损失所得税处理问题的公告》(2010. 7. 28.)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지분투자손실소득세 처리문제에 관한 공고〉
7	国家税务总局 국가세무총국	《国家税务总局关于取消合并纳税后以前年度尚未弥补亏损有关企业所得税问题的公告》(2010. 7. 30)〈국가세무총국의 연결납세를 취소한 후 전년도 결손전보가 되지 않은 관련기업소득세 문제에 관한 공고〉
8	商务部 상무부	《商务部关于外商投资管理工作的有关问题的通知》(2011. 3. 9) 〈상무부 외상투자관리사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9	财政部 国资委证监会 社保基金会 재정부,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회보장기금회	《境内证券市场转持部分国有股充实全国社会保障基金实施办法》 (2009. 6. 19) 〈국내 증권시장이 부분적 국유주식을 이전하여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하는 방법〉
10	财政部 国资委 证监会 社保基金会 재정부,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회보장기금회	《关于豁免国有创业投资机构和国有创业投资引导基金国有股转持义务有关问题的通知》(2010. 10. 13) 〈국유 창업투자기구와 국유창업투자선도기금이 국유주식의 이전의무 면책에 관한 통지〉
11	财政部 科技部 재정부, 과학기술부	《科技型中小企业创业投资引导基金股权投资收入收缴办法》(2010. 12. 9.)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창업투자선도기금 지분투자수입의 징수방법〉
12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무청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支持创业投资企业发展相关工作的通知》(2014. 5. 13.)〈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무청의 진일보로 창업투자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사업을 촉진할 것에 관한 통지〉

〈표 2〉 중국 사모펀드 관련 지방법규와 정책

북경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中共北京市委人民政府关于促进首都金融业发展的意见》 〈중공 북경시위 인민정부의 수도금융업발전을 촉진할 것에 관한 통지〉 2. 《关于促进首都金融产业发展的意见实施细则》 〈중공 북경시위 인민정부의 수도금융업발전을 촉진할 것에 관한 통지〉 3. 《关于促进股权投资基金业发展的意见》 〈지분투자기금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에 관한 의견〉 4. 《在京设立外商投资股权投资基金管理企业暂行办法》 〈북경 외상투자 지분투자기금관리기업 잠정방법〉
상해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关于本市股权投资企业工商登记等事项的通知》 〈상해시 본 지역의 지분투자기업 공상등기 등 사항에 관한 통지〉 2. 《关于浦东新区促进股权投资企业和股权投资管理企业发展意见》 〈포동신구 지분투자기업과 지분투자관리기업의 발전에 관한 의견〉 3. 《浦东新区促进股权投资企业和股权投资管理企业发展的实施办法》 〈포동신구 지분투자기업과 지분투자관리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에 관한 시행방법〉 4. 《上海市浦东新区设立外商投资股权投资管理企业试行办法》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지분투자관리기업의 설립에 관한 시행방법〉 5. 《上海市关于本市股权投资企业工商登记等事项的通知》 〈상해시 각 구현 지분투자기금우혜정책 비교〉 6. 《上海市创业投资引导基金管理暂行办法》 〈상해시 창업투자 선도기금관리 잠정방법〉
심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深圳经济特区创业投资条例》 〈심천경제특구 창업투자조례〉 2. 《深圳市人民政府关于加强发展资本市场工作的意见》 〈심천시 인민정부의 자본시장 발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관한 의견〉 3. 《深圳市综合配套改革总体方案》 〈심천시 종합개혁총체적 방안〉 4. 《深圳经济特区金融发展促进条例》 〈심천 경제특구 금융발전 촉진조례〉 5. 《深圳市支持金融业发展若干规定》 〈심천시 금융업발전 지원에 관한 약간의 규정〉 6. 《深圳市支持金融业发展若干规定干实施细则》 〈심천시 금융업발전 지원에 관한 약간의 규정 시행세칙〉 7. 《关于加强自主创新促进高新技术产业发展的若干政策措施》 〈자주창의적으로 고신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 8. 《关于促进股权投资基金发展的若干规定》 〈지분투자기금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규정〉

Ⅲ. 중국 사모펀드 관련 규정의 최근 동향

1. ‘중앙 편제사무실의 사모주권기금의 관리직책 분담에 관한 통지’ (2013.6.)⁹⁾

장기간 중국의 사모펀드 관리업무는 국가개혁과 발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관리권 귀속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2013.6 결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로부터 사모펀드의 관리권을 넘겨받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중국의 사모펀드의 관리부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⁰⁾ ‘중앙 편제사무실의 사모주권기금의 관리직책 획분에 관한 통지’의 내용에 따르면, 증권감독위원회는 사모주권기금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적절한 감독관리를 진행하며(适当监管),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혁과 발전위원회는 사모주권기금의 발전을 추진할 정책적 조치를 제정하고, 해당 부서와 함께 정부의 사모주권기금 출자에 대한 표준과 규범의 제정에 참여

하며, 업무상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의 사모펀드 감독관리부서는 명확해졌으나, 지방 감독관리기구는 여전히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방의 사모펀드관리부서로써 개혁과발전위원회·상무위원회·금융사무실·재정국·세무국·공상국 등 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관리부서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모펀드 관리부서의 혼잡한 상황은 중국 사모펀드의 발전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의 사모펀드 관리부서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통일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각 지방의 사모펀드의 주요 감독부서¹¹⁾

지역	설립허가부서	등기등록부서	(등록)감독부서
북경	북경시 상무위원회	북경시공상국 중관총본국	북경시금융국 북경시발전개혁위
상해	푸둥시 구경제위원회	상해시공상행정 관리국 푸둥시구본국	금융서비스 사무실
천진	천진시 상무부문	천진시공상부문	천진주식투자기금 발전과

9) 《中央编办关于私募股权基金管理职责分工的通知》(中央编办发, 2013 22号)

10) ‘중앙의 사모주권기금의 관리직책분공에 관한 통지’(《中央编办关于私募股权基金管理职责分工的通知》(中央编办发 2013 22号))와 최근 ‘중앙편제사무실의 창업투자기금 관리직책문제의견에 관한 답변’(《中央编办综合司关于创业投资基金管理职责问题意见的涵》)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창업투자기금을 포함한 사모주권기금의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3.5에 국가개혁과발전위원회에서 창업투자와 주권투자를 주관하던 재정금융부서의 담당자도 증권감독위원회의 기금부에서 사모기금사업조의 팀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11) 刘金志, “人民币私募股权投资基金法律问题简析”, 《中国高新科技企业》, 2010年 8月, 101면.

2. ‘사모투자기금관리인등기와 기금등록방법(시행)’(2014.2.7.)

얼마전에 새로 시행된 ‘증권투자기금법’은 사모증권투자기금을 규제범위에 넣고, 기금업협회가 사모증권투자기금관리인 등기와 사모기금의 등록업무를 책임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앙편제사무실의 동의를 얻고,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업협회에 구체적으로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의 등기와 사모기금등록업무를 수권하고, 항업협회가 자율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사모기금등록범위에 속하는 기금으로서, 사모증권투자기금, 사모주권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등 관리인은 반드시 기금업협회에 사모투자기금관리인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가 관리하는 사모기금은 반드시 기금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리하여 중국의 사모기금등록업무가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여기서 사모투자기금관리인등록과 사모기금등록은 행정허가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각종 기금에 대하여 사후적 등록을 실시하며, 항업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규정에서는 주로 사모투자기금관리인등록·기금등록·종사인원관리·정보보고·자율관리 등 방면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사모투자기금관리인등록에 관하여 ‘방법’은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은 반드시 기금업협회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업협회회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은 전자등록을 하는 동시에 서면의 등기등록서약을 제출하

여야 한다. 일정 사유로 인한 등록유예 외에, 등기신청서류가 완비할 경우, 기금업협회는 해당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의 기본상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사모기금관리인의 등기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사모기금의 등록에 관해서 ‘방법’은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이 사모기금 모집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모기금등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기금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모기금의 주요투자방향에 따라 기금유형을 밝히고,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기금업협회는 등록된 사모기금정보에 대하여 공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등록을 마친 사모기금은 증권관련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사모기금 종사인원의 관리에 관해서는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은 규정에 따라 기금업협회에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종업인원의 기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모투자기금관리인은 사모기금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보고의무와 수시보고의무가 있는데, 사모증권투자기금에 관해서는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사모투자기금은 매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모기금은 항업자율관리를 실시하는데, 기금업협회는 사모투자기금관리인 및 그 종사인원에 대하여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리스트를 만들고, 민원을 접수하며, 항업 내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사모기금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고 하였다.

그 외 ‘방법’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금업협회는 사모기금등기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기금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모투자기금관리인등기·기금등록·종업인원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동시에 기금업협회는 사모기금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기금위탁관리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모기금 공시를 통하여 사모기금이 위탁관리를 밝혀 투자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잠정방법’ (2014.8.22.)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잠정방법’(이하 ‘방법’)은 처음으로 사모펀드의 감독관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규정으로써, 이는 일전에 공포한 ‘증권투자기금법’, ‘중앙편제판공실의 사모주권기금관리직권분공에 관한 통지’, ‘중앙편제판공실종합사의 창업투자기금관리직책문제에 관한 의견’¹²⁾ 및 ‘국무원의 진일보 자본시장의 건강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¹³⁾에 실시가능한 세부규정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법’의 공포는 각종 사모기금 특히, 창업투자기금의 정책제정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진일보로 세수·재정·공상등기 등 관련 정책의 제정을 촉진하고, 사모기금의 발전을 촉진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등록제도

각종 사모기금관리인은 반드시 기금업협회에 신청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각종 사모투자기금은 자금모집이 완료된 후, 반드시 기금업협회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금업협회는 반드시 사모기금관리인 등기서류가 구비된 후, 20일 내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사모기금관리인의 명단 및 기본상황을 공시하여, 사모기금관리인의 등기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모기금관리인이 법에 따라 해산·취소 또는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 또는 일반 동업인(GP)은 20일 내에 기금업협회에 보고하고, 기금업협회는 반드시 제때에 기금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금업협회의 등기등록은 사모펀드관리인의 투자능력과 지속적인 합법운영상황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없으며, 기금재산안전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적격투자자제도의 도입

‘방법’은 자산규모와 수입상황·리스크식별 능력과 리스크부담능력·1회 최소인수금액 등 3개 측면으로부터 적격투자자판단기준을 구성

12) 《中央编办综合司关于创业投资基金管理职责问题意见的函》编综函字[2014]61号.

13) 《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的若干意见》(2014.5.9.)国发[2014]17号.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사모기금은 반드시 적격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야 하며, 1회 사모기금의 투자자 인수는 누적하여 ‘회사법’, ‘동업기업법’, ‘증권투자기금법’ 등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사모기금의 적격투자자란 해당 리스크식별능력과 리스크부담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사모기금에 투자하는 1회 투자금액이 100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단위의 경우 순자산이 1000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개인일 경우 최근 3년 평균 연소득이 50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방법’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적격투자자로 간주한다. ① 사회보장기금·기업연금 등 양로기금 및 자선기금 등 사회공익기금, ② 법에 따라 설립되고 기금협회에 등록된 투자계획, ③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기금에 투자하는 사모기금관리인 및 종사인원, ④ 중국 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투자자이다.

그 외에도 편법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법’은 동업기업·계약 등 비법인 형식으로 다수 투자자자금을 모집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사모기금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 판단하고 투자자 인원수를 합병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기금협회에 등록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단일한 적격투자자로 보고 실질적인 투자자 확인 및 투자자 합병계산규정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하였다.

다. 사모펀드의 자금모집 규정

‘방법’은 사모펀드의 자금모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적격투자자 외의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며, 공중매체 또는 특강·보고회·분석회의 등 형식과 광고·전단지·문자·위챗·블로그·이메일 등 방식으로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사모기금을 추천하지 못한다. ②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또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투자자의 리스크식별능력과 리스크부담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서면으로 적격투자자조건에 부합된다는 승낙을 하여야 한다. ④ 사모기금 관리기구가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사모기금에 대하여 리스크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리스크식별능력과 리스크부담능력에 해당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사모기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는 리스크설문조사에 여실히 응하고, 자산 또는 수입상황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투자자는 위탁자금래원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비법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사모기금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 사모펀드 투자운영 규정

‘방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증권투자기금법’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이를 참조하여 기금계약을 제정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금계

약의 약정에 따라 기금위탁관리사항을 안배하고, 위탁관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모기금재산안전을 위한 조치와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사모기금관리인이 관리하는 부동산 유형의 사모기금에 대해서는 전문적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가 이익이전 또는 이익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사모기금관리인·위탁관리인·판매기구 및 기타 사모서비스기구 및 그 종업인원이 금지하여야 할 투자운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⑤ 사모기금관리인은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여실히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로는 기금투자·자산부채·투자수익배분·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실적보수·이익충돌의 가능성 및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그 외 ‘방법’은 정보보고 및 중요 문서자료의 보존에 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 사모기금 관련 기구 및 종사인원의 금지행위

- 자신의 고유자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기금재산과 혼동하여 투자하는 행위
- 자신이 관리하는 기금재산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경우
- 기금재산 또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투자자 이외의 사람을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전달하는 행위

- 기금재산을 침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얻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이 관련된 거래 활동을 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기금재산과 투자자 이익에 손해를 주는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 직무유기 또는 규정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및 기타 부정당 거래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 법률·행정법규와 중국 증권감독회의 규정상 금지된 기타 행위

마. 기금업협회의 자율규제

- ① 기금업협회는 사모기금관리인등기·사모기금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모기금관리인과 사모기금정보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지키고,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기금업협회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분소) 및 기타 관련 기구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모기금상황을 분석하고, 제때에 사모기금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금업협회는 반드시 사모기금항업자율규칙을 제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회원 및 종업인원의 업무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회원 및 종사인원이 법률·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과 기금업협회의 자율규칙을 위반할 경우, 기금업협회는 정상에 따라 자율관리조치를 취하고, 사이트를 통하여 위법행위 또는 규칙을 어긴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

또는 종업인원이 위법·위규행위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업협회는 반드시 민원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 조정을 하여야 한다.

바.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관리

증권감독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분소)는 사모기금관리인·사모기금위탁관리인·사모기금판매기구 및 기타 사모서비스기구에 대하여 사모기금업무상황에 대한 통계감독과 검사를 진행하며, “증권투자기금법”의 해당 규정(증권투자기금법 제11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감독대상의 신용정보는 증권선물시장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감독당국은 사모기금관리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을 실시한다. 해당 감독대상이 법률·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증권감독위원회 및 파출기구는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감독담화·경고문발송·공개구탄 등 행정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창업투자기금에 대한 특별규정

본 ‘방법’에서는 창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재차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창업투자기금이란 주로

비상장창업기업의 일반주식 또는 법에 따라 일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주권투자기금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창업투자기금이 창업 초기에 처해있는 소형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세무혜택을 받는 창업투자기금은 투자범위가 반드시 국가 해당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금업협회는 기금관리인등기·기금등록·투자상황보고·회원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사모기금과 차별화된 항업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차별화된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및 파출기구(분소)는 창업투자기금이 투자방향검사 등 절차에서 기타 사모기금과 차별화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계좌개설·발행거래·투자회수 등 방면에서 창업투자기금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진일보로 창업투자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것에 관한 통지”(2013.5.13.)¹⁴⁾

중국에서 VC에 관하여 전문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데, 2003년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과 2006년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은 중국 창업투자법제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그 외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

14)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支持创业投资企业发展相关工作的通知》(2014.5.13.) 发改办财金[2014]1044号

여 중국 정부는 세금 등 각종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진일보로 창업투자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것에 관한 통지”는 법적 또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장래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일보로 관리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전한다. 국가개혁과 발전위원회는 창업투자기업의 구체적인 연도검사등록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해야 하는 창업투자기업의 등록업무를 창업투자기업의 등록소지 성급등록관리부서에 이전한다.

② 창업투자인도기금의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각 성급등록관리부서는 ‘국무원 사무실의 개혁발전위원회 등 부서의 창업투자인도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규범화할 것에 관한 통지¹⁵⁾’에 근거하여, 창업투자인도기금의 설립을 추진하고, 사회자본을 창업투자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소형기업의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신흥산업창업투자계획의 실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의 조절작용과 정보의 인도작용을 강화하고, 관리를 규범화하며, 창의성을 격려하는 원칙에 따라, 신흥산업창업투자계획이 창업투자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고신기술산업영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각 성급등록관리부서는 신흥산업창업투자계획이 창업투자기업의 등록관

리와 서비스업무에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④ 조건에 부합되는 창업투자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한다. 소형기업에 투자하는 전문적인 채권발행신청의 심사효율을 높인다. 조건에 부합되는 창업투자기업의 주주 또는 유한동업자가(LP)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창업투자기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⑤ 창업투자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각 성급등록관리부서는 2014년도 등록된 창업투자기업 연도검사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점적으로 창업투자기업이 증권시장에서 규정을 어긴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5월말 이전에 등록된 창업투자기업 및 그 관리고문기구의 연도검사를 완성하며, 연도검사에 합격한 창업투자기업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가 세수혜택을 받는데 일조하고, 창업투자기업의 주식소유의 이전의무(转持)의 면제 등 우대정책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⑥ 엔젤투자기구의 발전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엔젤투자기구를 창업투자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지지하며, 해당 정책적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각 지방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엔젤투자발전의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여 제정하며, 그가 창업의 지지와 확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⑦ 진일보로 항업협회의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중국투자협회 주권·창업투자전문위원회와 각

15) 《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等部门关于创业投资引导基金规范设立与运作指导意见的通知》(2008.10.18.)国办发[2008]116号.

지방 창업투자협회는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급 등록관리부문은 각급 협회가 창업규범의 자율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IV. 결론

2013년 사모펀드의 감독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써 ‘증권투자기금법’개정을 들 수 있는데, 개정 논의 중에 사모펀드를 ‘증권투자기금법’의 규제대상에 넣을지 여부에 관하여 학자들 간 나아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논의 끝에 사모펀드는 결국 ‘증권투자기금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 뒤 사모주권투자기금에 관하여 어떠한 감독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 끝에 ‘사모주권투자기금감독관리잠행방법’과 ‘사모투자기금관리인등기와 기금등록방법(시행)’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는데, 이 두 규정은 사모펀드

감독관리에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 감독관리당국의 확정으로부터 시작하여 2013-2014년은 사모펀드감독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법규정과 정책들은 중국 사모펀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 사모펀드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중국은 강력한 금융개혁정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내 투자자 특히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관련 법제 및 정책은 부단히 보완 중에 있으나, 관련 법제의 미비에 따른 투자위험이 상존하므로 향후 중국의 법제 및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김 로 룬

(중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참고문헌

- 김종우, “중국 사모펀드에 대한 법적 고찰-요건과 감독·관리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9집 제4호, 2009. 7.
- 남옥매, “중국에서의 외국PEF 설립근거 및 방식”, 외국법제동향 2011년 제8호.
- 박춘실, “중국 사모펀드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 류위봉, “중국 사모펀드의 현황 및 법적 규제 연구”,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통권 제72호), 2012.5.
- 王荣芳, “论我国私募股权投资基金监管制度之构建”, 《比较法研究》, 2012年 第1期.
- 刘金志, “人民币私募股权投资基金法律问题简析”, 《中国高新科技企业》, 2010年 8月.
- 卢文道, 谭婧, “《证券投资基金法》修改中私募基金法律规制的若干问题”, 中国民商法律网.
- 肖宇, “中国涉外股权投资基金法律问题研究”, 西南政法大学博士学位论文, 2010年.
- 李丹, “中国私募股权投资基金投资者准入法律制度完善”, 《中国招标》, 2013年 第11期.